

공고 제 2020 - 8 호

제18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

안성시의회 송미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어,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8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.

다 음

1. 일 시 : 2020년 3월 17일(화) 오전 10시
2. 장 소 : 안성시의회 본회의장

2020 년 3 월 3 일

안 성 시 의 회 의 장 신 원

